

3.3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

해양오염에 대한 국민신고를 통해서 해양경찰의 해양오염감시체계를 보완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포상금 제도 운영

□ 지급 근거

-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(신고포상금), 시행령 제91조의2, 규칙 82조의2
-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(2024. 10. 2. 훈령 제406호)
 - * (최초시행)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(제정 '96.8.8)
 - * (법 제 화)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(신설 2009.12.29.)

□ 포상금 지급대상

-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또는
-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
 - * 포상금 지급대상 : 오염위반 행위자를 특정한 신고 + 신고를 통해 행위자를 적발한 경우

□ 포상금 지급액 : 5만원~300만원

- * 비과세 근거 : 소득세법 제12조(비과세소득), 시행령 제18조(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)

□ 지급방법

- 해양오염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해경서 등에 제출
-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심의 후 지급(22.11.28. 개정)
- 하나의 사건으로 2명 이상 신고 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

□ 지급현황

연도	신고 접수	의법 조치	포 상 금 지 급								
			구 분		200만원 ~ 300만원	100만원 ~ 200만원	50만원 ~ 100만원	30만원 ~ 50만원	10만원 ~ 30만원	5만원 ~ 10만원	5만원
					총 계	건수	금액(천원)	건/금액	건/금액	건/금액	건/금액
'21	1,582	283	43	9,220	2/5,020	-	-	1/350	10/2,030	13/970	17/850
'22	1,675	237	48	8,380	1/3,000	-	2/1,550	1/350	8/1,530	6/450	30/1,500
'23	1,504	278	53	4,330	-	-	-	1/500	5/1,150	10/830	37/1,850
'24	1,588	276	42	4,330	-	-	-	1/500	9/1,750	13/1,130	19/950
'25	2,466	301	48	5,810	-	-	1/1,000	2/900	7/1,760	7/600	31/1,550

□ 포상금 지급기준 (시행령 제91조의2제3항, 별표18의2)

유출물질 \ 포상금액		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	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	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	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	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	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	5만원
기름	중질유	3,000 ℓ 이상	2,000 ℓ 이상 3,000 ℓ 미만	1,000 ℓ 이상 2,000 ℓ 미만	500 ℓ 이상 1,000 ℓ 미만	50 ℓ 이상 500 ℓ 미만	5 ℓ 이상 50 ℓ 미만	5 ℓ 미만
	경질유	5,000 ℓ 이상	3,000 ℓ 이상 5,000 ℓ 미만	2,000 ℓ 이상 3,000 ℓ 미만	1,000 ℓ 이상 2,000 ℓ 미만	100 ℓ 이상 1,000 ℓ 미만	10 ℓ 이상 100 ℓ 미만	10 ℓ 미만
	선저폐수						1000 ℓ 이상	1000 ℓ 미만
해양배출폐기물 (지정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배출한 경우)			10톤 이상	5톤 이상 10톤 미만	3톤 이상 5톤 미만	1톤 이상 3톤 미만	0.5톤 이상 1톤 미만	0.5톤 미만
폐기물	수은 및 그 화합물, 카드뮴 및 그 화합물, 납 및 그 화합 물, 비소 및 그 화합물, 구리 및 그 화합물, 크롬 및 그 화 합물, 아연 및 그 화합물, 폴 리염화비페닐, 6가크롬화합물, 유기할로겐화합물, 시안화합 물, 유기인화합물, 불화물, 페 놀류, 트리클로로에틸렌, 테트 라클로로에틸렌, 유기실리콘 화합물, 폐합성수지, 폐합성고 분자 화합물, 폐산, 폐알칼리			10톤 이상	5톤 이상 10톤 미만	1톤 이상 5톤 미만	0.5톤 이상 1톤 미만	0.5톤 미만
	동식물성고형물, 분뇨, 오니류 및 그 밖의 폐기물			25톤 이상	15톤 이상 25톤 미만	10톤 이상 15톤 미만	5톤 이상 10톤 미만	5톤 미만
유해 액체 물질	알라클로르, 알칸, 그 밖에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X류 물질			10,000 ℓ 이상	5,000 ℓ 이상 10,000 ℓ 미만	1,000 ℓ 이상 5,000 ℓ 미만	500 ℓ 이상 1,000 ℓ 미만	500 ℓ 미만
	아세톤 시아노히드린, 아크릴 산, 아세트산, 아세트산 무수 물,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Y, Z류 물질			25,000 ℓ 이상	15,000 ℓ 이상 25,000 ℓ 미만	5,000 ℓ 이상 15,000 ℓ 미만	1,000 ℓ 이상 5,000 ℓ 미만	1,000 ℓ 미만
	평가는 되었으나 유해액체물질 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잠정 평가물질						10 ℓ 이상	10 ℓ 미만

1. 범죄의 경중, 피해의 정도 그 밖에 범인검거와 관련하여 신고인의 적극성 등 사정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범위에서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.
2. 중질유란 원유, 벙커유 등 지속성 기름을 말하며, 경질유란 경유, 등유, 휘발유 등 비지속성 기름을 말한다.